

法人稅의 二重課稅 問題에 관한 研究

이 현 선

國民經濟에서 企業들이 차지하는 比重이 큰만큼 企業을 대상으로 賦課되는 租稅인 法人稅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法人의 本質을 '法人實體說'로 보느냐, '法人擬制說'로 보느냐에 대한 논의와 함께 課稅物件의 本質을 '能力' 혹은 '便益'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法人稅의 二重賦課 여부가 제기되고 있다. 法人擬制說과 法人稅를 능력에 대한 租稅로 보는 경우, 企業이 經濟活動을 통하여 획득한 法人源泉所得에 대해 法人稅가 株主의 配當所得에 所得稅가 부가되는 二重課稅의 理論的 根據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二重課稅는 衡平성에 있어 첫째, 法人과 個人事業者 간의 不衡平, 둘째 동일한 法人源泉所得에서는 高所得層株主와 低所得層株主 간의 逆進的 課稅의 不衡平 등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며, 效率의 측면에서는 法人-非法人간, 이익금의 配當處分-留保處分간, 借入資金調達-自己資金調達간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資源配分の 왜곡문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效率 및 衡平의 저해에 따른 社會厚生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法人稅 改善의 구체적 方案으로 支給利子の 損費認定 制限, 增資所得控除 擴大, 配當에 대한 損費認定, 配當稅額控除 擴大와 극단적으로는 法人稅 廢止 등의 方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에서 支給利子の 損費認定 制限은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 序 論

우리 나라의 經濟는 눈부신 發展을 이루어 왔고 오늘날 세계화에 맞추어 國際經濟 속에서 競爭力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76년의 稅制改革 후 많은 稅法改正등으로 現行 租稅體系가 형성되어 왔으나 이러한 改正들이 반드시 改善의 방향으로만 작용된 것이 아님은 사실이다. 정책 담당자들의 임시응변에 사로잡힌 政策推進과 같은 결함 이외에도 構造的 결함을 갖고 있다. 즉, 租稅行政과 納稅道義가 先進化되어 있지 못하다. 더구나 長期的이고 根本的인 改革보다는 政治的 力學關

係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租稅의 기본 요건들은 衡平性, 明瞭性, 效率性, 納稅, 徵稅의 經濟性 등으로 나열해 본다면 우리 나라 租稅가 이러한 조건에 좀더 합당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改善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

1992년 우리 나라 國稅收入 중에서 附加價值稅가 28.6%, 所得稅가 22.7%, 法人稅가 16.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國民經濟 중 企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企業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租稅인 法人稅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法人稅는 企業의 자금조달 활동의 費用인 金融費用에 課稅함으로써 稅後 金融費用을 상승시켜 자금수요자의 자금수요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法人稅는 金融費用 중 支給利率에 대해서는 거의 課稅하지 않고 支給配當에 대해서만 課稅함으로써 資金需要 構造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말미암아 經濟의 均衡量 및 均衡價格에 변화를 일으키고 經濟 전체의 厚生水準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문에서는 현행 法人稅制가 갖고 있는 二重課稅와 法人所得이 個人所得에 비해 重課稅되고 있는 점을 보고, 法人稅가 效率性 및 衡平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II장에서는 우리 나라 현행 法人稅制度가 어떠한 방식으로 課稅되어 二重課稅의 문제점이 발생하며, 法人所得이 個人事業所得에 비해 重課稅되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갖는 經濟的 效率 및 衡平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改善 方案에 대하여 살펴본 후 結論을 맺도록 하겠다.

II. 法人稅 課稅 現況과 二重課稅 問題

1. 우리 나라의 法人稅 課稅 現況

法人稅는 문자 그대로 法人에 대한 租稅이다.¹⁾ 法人稅의 課稅對象은 法人의 所得(利潤)이다. 法人의 所得은 주로 활동중인 法人의 매사업년도별 事業年度所得을 말하나 法人의 해산 또는 합병시에는 清算所得도 課稅對象이 된다. 사업년도 所得이란 企業會計上의 當期純利益(總收入金額에서 總費用을 控除한 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년도에 속한 益金總額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한 損金의 總額을 控除한 금액이다. 經濟學에서는 이를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라 부르며, $\Pi = TR - TC$ 로 표현된다.

1)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 중에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법인이 포함되며, 영리법인 중에는 합명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으나 주식회사 비중이 90% 이상이다.

사업년도 所得에서 移越缺損金, 非課稅所得, 所得控除額을 공제한 금액이 法人稅의 課稅標準이 된다. 여기서 移越缺損金이란 각 사업년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년도의 所得金額 또는 課稅標準의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非課稅所得으로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所得, 합병으로 인한 擬制配當所得과 清算所得이 있다. 所得控除로는 증자소득공제, 기술소득공제, 기술용역사업소득공제, 해외사업소득공제, 축산업소득공제가 있다.

益金이라 함은 그 法人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收益金額을 말하며, 損金이라 함은 그 法人의 純資產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損費의 금액을 말한다.

支給利子是 損費의 일부로 인정됨으로써 法人所得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法人稅의 課稅標準에서 제외된다. 支給利子라 함은 영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自己資本 이상으로 資金이 소요되어 그 不足資本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경우에 그 他人資本에 대한 資本費用을 뜻한다.²⁾ 稅法상의 支給利子是 債務에 대한 이자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용통어음의 할인을 위한 할인료와 팩토링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이자도 이에 포함된다.

우리 나라 國稅收入의 推移는 <표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85년부터 1992년까지 7년간 크게 증가하여 약 3배가량 된다. 이는 특히 所得稅 및 法人稅가 동기간 동안 각각 5.4배 및 5.3배 증가함에 크게 힘입었고 附加價値稅 및 特別消費稅도 3.5배, 3.1배 증가하였다.

한편 <표 2>에서 1992년 國稅收入에서 각 稅目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주는데 附加價値稅가 28.6%, 所得稅 및 法人稅가 각각 22.7%, 16.9%를 차지한다. 所得稅는 1985년 12.5%에서 1991년 22.7%로 法人稅는 9.5%에서 16.9%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附加價値稅는 24.4%에서 28.6%로 特別消費稅는 8.3%에서 8.7%로 소폭 증가하였다.

法人稅가 企業, 즉 資金需要者의 資金調達活動에 영향을 미치므로 企業의 자금조달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표 3>과 같다. 이 표에서는 지난 몇 년간 企業의 直接金融 비중이 間接金融 비중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2) 회계학적 측면에서 법인기업의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데 지급이자도 영업외비용의 하나에 해당된다.

① 영업비용 : 제조, 판매 및 일반관리에 따른 비용

 재고자산비용, 고정자산비용, 이연자산비용, 판매 및 일반관리비

② 영업외비용 : 지급이자, 대손상각, 유가증권매각손, 외환차손

〈표 1〉 최근의 國稅收入推移

(단위 : 억 원)

연 도	1985	1987	1989	1991	1992
국세합계	118,763	163,437	212,341	303,198	352,184
내국세	74,969	100,120	152,084	240,891	300,800
소득세	14,816	21,589	35,569	64,594	80,084
법인세	11,267	16,824	31,079	45,855	56,410
부가가치세	29,012	36,505	52,602	82,526	100,763
특별소비세	9,808	11,897	12,570	22,465	30,686
주 세	5,102	5,815	8,931	11,453	13,290
기 타	2,278	3,972	8,855	10,231	10,782
과년도수입	1,929	2,520	855	1,525	2,915
인지수입	757	998	1,623	2,242	2,150
관 세	15,661	26,965	21,176	34,355	31,532
교육세	3,211	4,113	4,234	15,234	18,223
방위세	16,632	23,195	34,832	12,631	1,629
전매납부금	8,920	9,043	15		

자료 : 재무부, 『財政金融統計』, 1993.5.

〈표 2〉 최근의 國稅收入推移

(단위 : 억 원)

연 도	1985	1987	1989	1990	1991	1992
국세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내국세	63.1	61.3	71.6	79.5	79.5	85.4
소득세	12.5	13.2	16.8	21.3	21.3	22.7
법인세	9.5	10.3	14.6	15.1	15.1	16.9
부가가치세	24.4	22.3	24.8	27.2	27.2	28.6
특별소비세	8.3	7.3	5.9	7.4	7.4	8.7
주 세	4.3	3.6	4.2	3.8	3.8	3.8
기 타	1.9	2.4	4.2	3.3	3.4	3.1
과년도수입	1.6	1.5	0.4	0.8	0.5	0.8
인지수입	0.6	0.6	0.8	0.7	0.7	0.6
관 세	13.2	16.5	10.0	10.3	11.3	9.0
교육세	2.7	2.5	2.0	1.9	5.1	5.2
방위세	14.0	14.2	16.4	16.5	4.2	0.5
전매익금	7.0	5.5	0.0	0.0	0.0	0.0

자료 : 재무부, 『財政金融統計』, 1993. 5.

〈표 3〉 企業部門의 資金調達

(단위 : 10억 원, %)

간접금융	13,660.6	35.5	19,472.1	38.4	20,179.8	38.2
(통화금융기관)	(5,697.6)	(14.8)	(7,994.8)	(15.8)	(8,477.4)	(16.0)
(비통화금융기관)	(7,963.0)	(20.7)	(11,477.3)	(22.6)	(11,702.4)	(22.2)
직접금융	20,716.4	53.8	21,512.2	42.4	19,866.1	37.6
(기업어음)	(5,130.8)	(13.3)	(1,901.8)	(3.7)	(4,182.5)	(7.9)
(주식)	(8,301.1)	(21.6)	(5,986.7)	(11.8)	(6,451.6)	(12.2)
(회사채)	(4,932.1)	(12.8)	(10,931.2)	(21.5)	(6,616.3)	(12.5)
해외차입	-184.7	-0.5	3,247.0	6.4	3,583.0	6.8
기타	4,291.6	11.2	6,517.2	12.8	9,200.0	17.4
자금조달총액	38,484.0	100.0	50,748.4	100.0	52,828.9	100.0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3. 3.

2. 法人稅의 二重課稅 問題

法人稅의 二重課稅 問題의 출발은 納稅의 주체인 法人의 본질에 대한 논의부터 출발한다.

法人所得稅를 부인하며 法人所得稅의 부과는 二重課稅가 된다고 하는 法人稅 반대론은 '法人擬制說'(Fiction Theory)에 그 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다. 法人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人'이 아니며 법의 擬制에 의하여 人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 조직 자체는 그것을 통하여 株主 및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法的 및 經濟的 關係가 흐르는 단순한 導管(mere conduit)에 비유된다.

이와 반대로 法人所得稅를 옹호하며 法人所得稅는 株主에 대한 配當所得稅와 二重課稅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法人稅 支持論은 '法人實在說'(Real Entity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다. 法人이란 그의 개인구성원, 즉 株主들과 완전히 분리 독립된 經濟的 및 法的 實在體이다. 즉, 經濟社會에 있어서의 하나의 法的·經濟的 단위로서의 株主들과 구별되어 그 자신의 생명과 그에 따른 많은 特權과 利益을 향유하고 있다.

法人實在說이 옳은지 法人擬制說이 옳은지에 대한 선험적 결론은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와 같은 선험적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한 研究成果의 蓄積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경험적·실용적인 결론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다.

納稅者의 본질과 함께 살펴본 것은 課稅物件의 본질에 대한 논의다. 租稅의 근거는 사회구성원이 갖는 支給能力 혹은 사회구성원이 향유하는 便益에서 찾을 수 있다.³⁾ 法人을 實體로 파악하든 擬制로 파악하든 한 가지 확실한 점은 法人이 사회의 基本構成因子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이 個人과 法人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만약 法人에 대한 課稅가 행해진다면 그 課稅 根據는 각 法人이 갖는 支給能力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향유하는 便益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 나라 法人稅는 法人所得을 課稅物件으로 하고 있어 法人所得稅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所得이라고 하는 課稅物件이 능력의 指標로서 사용되었는지 便益의 지표로 사용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즉, 현행 法人稅가 法人能力稅인지 法人便益稅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⁴⁾

앞서 納稅者의 본질과 課稅物件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法人所得이 二重課稅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法人實體說을 받아들인다면 法人所得에 대한 二重課稅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는 法人稅를 法人能力稅로 보든지 法人便益稅로 보든지 상관없다. 法人實體說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納稅에 관한 法人과 株主가 서로 다른 별개의 인격체라는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따라서 配當分에 대한 法人稅課稅는 더 이상 동일 納稅者의 課稅物件에 대한 課稅가 아니라 상이한 納稅者의 課稅물건에 대한 課稅가 되는 것이다.

만약 法人擬制說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法人稅를 능력에 대한 租稅로 보는 경우에는 명백히 二重課稅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法人과 주주가 法人稅 段階 및 所得稅 段階에서 二重으로 課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法人擬制說을 받아들이면서도 法人稅를 便益에 대한 租稅로 보는 경우에는 二重課稅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納稅者의 상이한 課稅物件에 대한 課稅이기 때문이다. 즉, 配當所得에 대한 所得稅 課稅는 株主의 擔稅能力에 부과되는 租稅이며 法人所得 중 配當分에 대한 法人稅 課稅는 株主가 사회로부터 받아 향유하는 便益에 부과되는 租稅인 것이다.

法人所得稅의 二重課稅와 관련하여 한 가지 감안하여야 할 것은 法人所得稅를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느냐 하는 法人所得稅의 歸着(incidence)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法人所得稅가 물가의 등귀라는 형태로 근로자에게 轉嫁되거나 혹은 임금의 하락이라는 형태로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면 그것이 轉嫁되어 소비자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그 租稅의 부담을 하게 된 것만큼은 株主들의 부담이 되지 아니하므로 二重課稅는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法人稅는 株主들에 대하여

3) Colm (1955)은 법인세를 편익에 대한 조세로 보고 있다.

4) Musgrave-Musgrave [11]은 법인편익을 과세근거로 하는 경우 법인소득을 그 과세 물건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부가가치(법인소득+임금+地代+이자)가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차별적인 불이익을 주는 稅金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賣上稅(sales tax)가 불공평한 것이라고 비난받는 것과 동일한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二重課稅의 크기에 대한 결정적 요소로서의 法人稅의 轉嫁에 대하여 經濟學者 및 事業家들은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전통적인 학설은 法人所得稅는 전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순이익에 대한 所得稅는 물가와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이 견해는 租稅는 經濟的 의미에 있어서의 生産費가 아니라는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 이들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完全競爭의 상태에 있어서 물가는 개개 企業體의 조정을 초월한 시장력(market force)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租稅가 부과되기 전에 최대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최적수준의 生産量과 가격은 租稅가 부과된 후에도 여전히 최대의 이익을 올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法人稅의 부과로 인하여 資本에 대한 이익의 回收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개개 企業의 상품의 공급을 감소시키거나 가격을 인상시킬 수 없는 것이다. 獨占企業도 租稅가 부과되기 전의 최대이윤가격은 부과된 후에도 최대이윤가격이기 때문에 獨占價格은 法人稅 때문에 변경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견해에 대한 批判에 의하면 法人의 이익에 대한 租稅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물가 등귀 및 임금의 하락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와 賃金所得者에게 轉嫁되는 것이다.

첫째, 만약 諸企業體가 부과된 法人稅를 그들의 관점에서 생산의 費用項目으로 취급한다면 이미 설정된 물가가 그들 企業體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지 못하는 한 지배적인 企業體들의 동시적 반응을 통하여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둘째로 法人稅가 資本投資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 입각한 長期的 分析에 의해 法人稅의 대상이 되는 法人純所得의 일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는 企業의 단계적인 운영과 확립에 필요한 資本投資의 回收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감소되면 法人稅가 전가되지 않은 만큼 投資와 生産은 감소될 것이며, 따라서 공급의 감소는 물가를 상승시킨다. 혹자는 法人稅를 가리켜 '假裝된 販賣稅'(a sales tax in disguise)라고 하기도 한다.⁵⁾

二重課稅의 크기와 내용, 즉 法人 源泉所得에 대한 총합적인 세부담(法人稅와 配當所得稅의 합계액)이 法人稅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稅負擔에 비하여 過多課稅 또는 過少課稅가 되는지, 그리고 그 過多課稅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法人所得과 法人稅率의 크기, 法人所得의 배당지불비율과 유보비율 그리고 그에 따른 配當所得 및 留保所得의 크기, 個人所得稅率과 그 累進度, 株式處分에 따른 資本利得稅率 등의 계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個人所得의 累進度도 二重課稅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5) Endres M. Vorhees, *New York Times*, 10 October 1943. "법인세는 단순히 비용이다. 그 법인세의 산정방법은 이 사실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비용은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구매대중에 의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는 실질상 은폐된 판매세(cocealed sales tax)이다."

다. 즉, 個人所得稅率의 累進度가 작을수록 過多課稅의 현상이 생기며, 그 累進度가 클수록 過多課稅가 적어지거나 오히려 過少課稅의 현상이 생긴다. 그리고 個人所得稅率이 累進度와의 관련에서 보면 配當所得이 적을수록 個人所得率의 累進度가 어느 정도 높더라도 過多課稅의 二重課稅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며, 配當所得이 클수록 所得稅率의 累進度가 크면 過多課稅의 부담이 적어지거나 오히려 過少課稅의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法人, 個人 所得稅의 並課로 인한 효과는 低所得층에게는 불리한 세 부담을 주고 高所得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法人所得과 個人事業所得에 대한 형평

앞장에서는 法人所得 중 배당분의 二重課稅 여부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留保分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었다. 이는 法人所得 중 유보분은 法人稅 段階에서 한 차례 課稅될 뿐, 所得稅段階에서는 課稅되지 않기 때문이다. 法人所得 중 유보분도 法人所得稅에서 한 차례 課稅되고 個人事業所得 중 유보분 역시 所得稅段階에서 한 차례 課稅된다. 그러므로 유보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法人所得이 個人事業所得에 비해 二重課稅 여부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만약 未實現 資本利得에 대한 資本利得稅, 혹은 株式讓渡差益에 대한 讓渡所得稅가 부과되고 있다면 유보분 역시 二重課稅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게 된다. 法人所得 중 유보분은 일단 法人稅로 課稅된다. 그런데 유보분의 증가는 株式價値의 상승을 초래하므로, 만약 이와 같은 주식가치의 상승분이 所得稅에서도 課稅된다면 이제 유보분에 대해서도 二重課稅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만약 未實現 資本所得에 대한 資本利得稅가 존재한다면 이 주식가치의 상승분은 당기에 있어서도 所得稅 段階에서 재차 課稅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資本利得稅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만약 株式讓渡 차익에 대한 讓渡所得稅가 존재한다면 장기에 있어서는 주식가치의 상승분이 所得稅 단계에서 재차 課稅된다. 이와 같이 유보분의 증가로 인한 주식가치의 상승이 法人稅에서 한 차례 課稅된 후에 所得稅 단계에서 재차 課稅된다면 이는 곧 二重課稅의 혐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未實現 資本利得에 대한 資本利得稅도 株式讓渡 差益에 대한 讓渡所得稅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法人所得 중 유보분에 대한 二重課稅 여부가 전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⁶⁾

현행 稅制下에서 法人所得이 더 重課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6) 1991년부터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유보이익 증가에 대한 의제배당과세가 폐지되어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所得稅를 S , 法人稅를 T 라고 할 때 이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法人所得 (A), 배당분의 비율 (a)와 法人稅率 (t), 所得稅率 (s)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설정할 수 있다.

$$S = sA \tag{1}$$

$$T = t(1-a)A + taA + s(1-t)aA \tag{2}$$

식 (2)는 다음과 같이 식 (3)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T = t(1-a)A + [t + s(1-t)]aA \tag{3}$$

이는 유보분의 부담과 배당분의 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T = tA + s(1-t)aA \tag{4}$$

식 (4)는 法人稅段階의 부담과 所得稅段階의 부담으로 나뉘어져 있다. 다시 초과부담(D)은 $T-S$ 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 = -(s-t)(1-a)A - (s-t)aA + s(1-t)aA \tag{5}$$

$$D = -(s-t)(1-a)A + (t-st)aA \tag{6}$$

식 (6)에서 유보분의 초과부담과 배당분의 초과부담으로 나타내어지고

$$D = -(s-t)A + s(1-t)aA \tag{7}$$

식 (7)에서는 法人稅段階의 초과부담과 所得稅段階의 초과부담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D 를 零으로 만드는 배당성향 a^* 는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 \frac{(s-t)}{s(1-t)} \tag{8}$$

〈표 4〉는 課稅標準 계급별로 a^* 를 구해 본 결과이다.

〈표 4〉 課稅標準 계급별 法人所得 重課 여부

所得稅率 계급	s	t	a^*	법인소득 중과 여부
400만 원 미만	5%	20%	-	중과
400만 원 ~ 1,000만 원	16	20	-	중과
1,000만 원 ~ 2,500만 원	27	20	32.4%	$a < 32.4 \rightarrow$ 법인소득 경과
2,500만 원 ~ 5,000만 원	38	20	59.2	$a < 59.2 \rightarrow$ 법인소득 경과
5,000만 원 ~ 1억 원	50	20	75.5	$a < 75.0 \rightarrow$ 법인소득 경과
1억 원 초과	50	34	48.5	$a < 48.5 \rightarrow$ 법인소득 경과

課稅標準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配當性向에 관계없이 法人所得이 重課된다. 그러나 이보다 높은 課稅標準에서는 配當性向이 基準性向보다 더 높지 않는 한 오히려 法人所得이 경과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1991년부터 1/3 gross-up配當稅額控除를 고려하면 法人所得優待의 폭은 더 커진다. 만약 100% gross-up이었다면 法人稅額(tA) 중에서 배당분에 대한 法人稅額(taA)을 주주에게 所得稅 稅額控除의 형태로 반환하고 대신 그만큼에 대한 所得稅額($staA$)을 새로이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한 T 감면효과는 바로 $(1-s)-taA$ 에 해당한다. 따라서 식 (2)는 식 (9)와 같이 쓸 수 있다.

$$\begin{aligned} T &= t(1-a)A + taA - \{taa - staA\} + s(1-t)aA \\ &= t(1-a)A + taA - \{(1-s)taA\} + s(1-t)aA \\ &= t(1-a)A + saA \end{aligned} \quad (9)$$

그러나 1/3 gross-up 제도에서는 배당분에 대한 法人稅額(taA)의 1/3만을 주주에게 반환하고 대신 그만큼에 대한 所得稅額 $\{(staA)/3\}$ 을 새로이 징수하고 있다. 이로 인한 T 감면효과는 $\{(1-s)taA/3\}$ 에 해당한다. 따라서 식 (10)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begin{aligned} T &= t(1-a)A + taA - \{taA/3 - staA/3\} + s(1-t)aA \\ &= t(1-a)A + taA - \{(1-s)taA/3\} + s(1-t)aA \\ &= t(1-a)A + saA + (2/3)(1-s)taA \end{aligned} \quad (10)$$

따라서 초과부담 D 는

$$\begin{aligned} D &= -(s-t)A + s(1-t)aA - \{(1-s)t/3\} aA \\ &= -(s-t)A + [s(1-t) - (1-s)t/3]aA \end{aligned} \quad (11)$$

D 를 0으로 만드는 a^* 는

$$a^* = (s-t) / [s(1-t) - (1-s)t/3] \quad (12)$$

따라서 <표 5>와 같은 표를 다시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配當性向은 어떠한가. <표 6>에서와 같이 1991년 기준 우리 나라의 산업별 平均配當性向은 최저 9.8%(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에서 최고 27%(도소매 숙박업) 사이에 분포되어 전 산업에 걸쳐 a^*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1/3 gross-up 配當稅額 控除를 고려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個人所得에 비해 法人所得이 더 重課되고 있는 가에 대한 답은 課稅標準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오히려 法人所得에 비해 個人事業所得이 더 重課되고 있다.

〈표 5〉 課稅標準 階級별 法人所得 重課 여부

과세표준계급	s	f	a*	법인소득 초과여부
400만 원 미만	5%	20%	-	중 과
400만 원 ~ 1,000만 원	16	20	-	중 과
1,000만 원 ~ 2,500만 원	27	20	341.8%	$a < 41.8 \rightarrow$ 법인소득 경과
2,500만 원 ~ 5,000만 원	38	20	68.5	$a < 68.5 \rightarrow$ 법인소득 경과
5,000만 원 ~ 1억 원	50	20	81.7	$a < 81.7 \rightarrow$ 법인소득 경과
1억 원 초과	50	34	58.5	$a < 58.5 \rightarrow$ 법인소득 경과

〈표 6〉 산업별 배당성향추이

연도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증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업	운수 창고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1983	11.8	25.8	18.6	0.2	11.1	16.9	16.4	49.9	7.3
1985	10.6	25.3	32.8	1.4	13.3	23.1	26.7	46.4	2.9
1987	7.6	15.5	24.8	7.3	18.1	21.5	17.2	16.6	2.4
1989	24.0	15.6	30.7	15.4	19.2	16.7	14.9	12.8	4.2
1991	18.1	16.6	25.0	14.2	13.2	27.0	24.7	14.5	9.8

자료 : 한국은행, 『企業經營分析』, 1992.

Ⅲ. 法人稅의 영향 및 改善代案

1. 經濟의 效率 및 衡平에 미치는 영향

二重課稅의 현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不衡平한 課稅效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法人源泉所得이 다른 所得(특히, 個人事業體의 所得)에 비하여 過多하거나 過少하게 課稅됨으로써 稼得主體가 다른 所得間에 지나친 課稅의 不衡平이 생기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조정을 가하지 않은 전통적인 방식의 法人稅의 부과로 인하여 法人源泉所得은 다른 所得에 비하여 지나친 비율의 過多課稅를 당하거나 過少課稅를 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法人源泉所得은 단순히 法人 조직에 의하여 所得을 가득했다는 이유 때문에 課稅上 크게 경감혜택을 받거나 과중부담의 손실을 보게 되는 不衡平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물론 法人 組織을 활용한 데 대한 적절한 追加負擔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지만 앞서 過多·過少

賦課의 내용은 이와 같은 성격과 범위의 부담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둘째, 동일한 法人源泉所得間에 있어서도 高所得層 株主의 所得과 低所得層 株主의 所得間의 세 부담에 있어서 累進課稅의 형평에 어긋나는 逆進負擔의인 課稅效果가 생기고 있다. 즉, 아무런 조정도 가하지 않는 法人稅의 부과는 法人源泉所得의 총합적인 세 부담면에서 볼 때 高所得株主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의 경감을 주게 되는 반면 低所得株主에게는 필요 이상의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됨으로써 주주간에 불형평하고 부당한 세 부담의 割當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法人稅의 부과로 인하여 배당될 所得에서 일률적인 세율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들에 의하여 비례적으로 분담되는 결과 法人稅率보다 높은 個人所得稅率의 適用을 받는 高所得株主들은 실질적으로 세 부담경감의 혜택을 받게 되며, 반면 法人稅率보다 낮은 個人所得稅率의 적용을 받는 低所得株主들은 실질적으로 세 부담가중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高·低所得 株主間의 불형평한 課稅現象은 특히 法人이 그 所得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게 된다.

셋째,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각국에 있어서 高所得層의 대주주는 法人體內에 있어서의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통하여 法人의 所得을 유보케 함으로써 法人稅制度를 '택스 쉘터'(tax shelter)로 이용하여 租稅延期 내지 回避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租稅의 회피는 주식처분에 대한 資本利得稅(讓渡所得稅)가 없거나 資本利得稅率이 낮은 나라에서는 더 심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上場法人의 주주에 대한 은행예금금리 정도의 배당을 제외하고는 法人所得 중 실지로 배당된 所得은 극히 적은 것을 보면 여기에는 企業體의 自體資金에 의한 再投資의 목적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넷째, 法人稅의 賦課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와 같은 현상은 法人所得稅와 더불어 租稅制度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個人所得稅의 실질적인 기능을 沮害하고 있는 것이다. 즉, 法人稅의 부과는 法人所得이 유보될 경우 주주 각자가 부담하게 되는 총합적인 세 부담에 逆進的인 영향을 줌으로써 個人所得稅制度의 累進課稅作用을 상쇄시키고 그 결과 總體所得稅의 課稅衡平을 파괴시키게 된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所得稅制度를 보면 6% 내지 55%의 超過累進稅로서 누진부담의 衡平과 所得再分配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個人所得 중 그 규모가 큰 것은 거의 모두가 法人源泉所得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法人源泉所得에 대한 누진형평의 課稅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진실로 규모가 큰 高所得者는 所得稅法에서 목적하고 있는 바의 累進課稅 대상에서 일탈되고 個人企業所得者 또는 勤勞所得者 등 法人源泉所得者보다도 비교적 규모가 작은 高所得者 내지 中位所得者만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다음은 法人稅가 稅源確保 및 效率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法人稅에서 支給利子가 損費로 인정됨으로써 法人稅의 稅源은 크게 낮아져 있다. 稅源確保라는 정책방향이 꼭 租稅收入의 극대화라는 정책방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租稅收入의 최적 규모는 여러 가지 經濟的·政治的 고려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이 최적 규모를 넘는 租稅收入은 오히려 사회 전체의 후생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 租稅收入의 최적 규모는 상승하는데 稅源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稅率의 상승을 통해 얼마든지 租稅收入을 確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稅源確保라는 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중요성은 오히려 稅源確保로 인하여 더 낮은 稅率로도 일정 租稅收入이 確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法人稅가 效率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주로 法人-非法人間,⁷⁾ 利益金の 배당처분-유보처분간, 차입자금조달-자기자금조달간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한 效率의 저해에 치중해 있다. 시장균형이 이미 效率을 달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균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法人稅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效率을 저해한다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시각은 法人-非法人間 상대가격의 변화에는 비교적 큰 무리가 없이 적용될 수 있다. 특별히 기존의 法人-非法人間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선험적인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익금의 배당처분-유보처분간, 차입자금조달-자기자금조달간 상대가격의 변화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시각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經濟에서는 利益金 중 留保分이 너무 적고 借入資金에 대한 依存度가 너무 높다는 인식하에 이미 社內留保獎勵 및 有償增資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이 뚜렷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균형을 깨뜨린다고 해서 모두 效率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기존 균형을 깨뜨리되 社內留保를 높이고 有償增資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效率의 저해가 아니고 效率의 증진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대로, 만약 기존균형을 깨뜨리되 社內留保를 낮추고 有償增資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단순한 효율저해가 아니고 더 심각한 형태의 효율저해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Harberger [9]에 의하면 法人稅는 法人資本에 대한 '平均' 有效稅率을 상승시킴으로써 法人資本과 非法人資本 간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이 연구에 의하면 1953년부터 1959년간 非法人所得에 대한 有效稅率이 31%였는데 法人所得에 대한 유효세율은 63%였기 때문에 資本이 法人部門에서 非法人部門으로 크게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관찰은 Feldstein-Summers [8]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여기에

7) 비법인이라 함은 주로 법인 형태를 갖추지 않은 '개인사업'을 의미한다. 비법인소득이라 함은 개인사업 소득과 같은 의미라고 해도 좋겠다.

서는 1970년 당시에 法人所得에 대한 有效稅率이 70%까지 이르렀으며, 有效稅率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非法人部門으로 資本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Shoven-Whalley [12]는 미국 經濟의 세분화된 생산부문에 대한 일반균형분석을 통하여, 法人稅로 인해 效率이 저해되므로 만약 이를 철폐하고 個人所得稅로 통합한다면 미국의 國民所得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法人稅로 인한 法人-非法人間 資本의 이동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Auerbach [7]은 Hall-Jorgenson(1967)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 資本의 使用者費用(user cost)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資本의 '限界' 有效稅率을 계산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1981년부터 1983년간 資本 중 구조물에 대한 有效稅率은 명목세율보다 더 낮았으며 특히 資本 중 設備資本에 대한 有效稅率은 零에 가까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法人所得이 특히 더 重課되지 않았으며 부문간 資本의 이동도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King-Fullerton [10] 역시 영국의 法人所得에 대한 有效稅率이 名目稅率보다 상당히 낮았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광태원[1]은 감가상각등 각종 租稅 減免으로 인해 우리 나라 法人所得稅에 대한 有效稅率이 1970년대 초까지는 名目稅率보다 2% 포인트 낮았으나 1970년대 후반 이래 1981년까지는 名目稅率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Stiglitz [13]는 法人稅로 인해 法人의 자금조달 중 차입자금의 非重課法人의 이익금 중 유보분의 비중이 각각 100%가 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法人稅에서 支給利率에 대해 損費인정을 허용할 뿐 아니라 未實現株式讓渡差益에 대해 課稅하지 않으며 또 실현된 株式讓渡差益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所得稅率이 적용됨으로써 이런 현상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兩極化現狀은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차입자금 및 유보분의 비중이 100%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그러나 法人稅로 인한 기존균형 변화의 방향에 대해 Stiglitz가 주장하는 바는 뚜렷하다. 즉, 法人稅는 資金調達 중 차입자금의 非重課利益金 중 유보분의 비중을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이제 法人稅가 效率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자. 法人稅가 效率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法人-非法人間, 이익금의 배당처분-유보처분간, 차입자금조달-자기자금조달간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먼저 法人稅로 인해 法人-非法人 資本費用의 상대가격이 얼마나 변화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라 그 결론이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法人稅에 의해 法人-非法人間 資本費用의 상대가격이 변화하고 또 이로 인해 效率이 저해된다는 결론을 맺기는 어렵다. 法人稅로 인해 배당처분보다 유보처분이 많아질 것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法人稅가 社內留保獎勵라는 정책방향에 이바지함을 의미한다. 法人稅로 인해 自己資金調達보다 借入資金調達が 더 증가할 것

이라는 데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法人稅가 有償增資 活性化라는 정책방향에 어긋남을 의미한다.

2. 法人稅의 바람직한 改善方案

法人稅制 改正을 위한 정책대안들은 주로 현행 法人稅가 有償增資活性化라는 정책방향에 어긋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로 말미암은 효율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들은 크게 法人稅 段階에서 작용하는 대안으로서 支給利子의 損費認定制限, 增資所得控除擴大, 配當에 대한 損費認定擴大가 있고 所得稅段階에서 작용하는 대안으로서 配當稅額控除의 擴大, 法人稅의 廢止를 들 수 있다. 이들 다섯 가지 대안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支給利子 損費認定의 制限

현재 法人의 支給利子は 법률로 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損費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는 損費認定을 더욱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損費로 인정되지 않는 비업무용 부동산 및 비업무용 기타자산, 특정자산 등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과 같이 損費認定의 예외를 稅法에 명시하는 否認目錄(negative list)보다는 損費不認定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의 支給利子만을 損費로 인정하는 認定目錄(positive list)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방안은 稅源確保의 정책방향에 기여한다. 이 방안의 시행을 통해 法人稅의 課稅標準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法人稅率 인하의 여력도 생기게 되는데, 法人稅率의 인하는 企業의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또 納稅者의 脫稅 動機가 감소된다는 장점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 방안이 衡平增進의 정책목표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이다. 勤勞所得에 비해 資本所得의 課稅捕捉率이 낮으며 高所得층일수록 所得 중 資產所得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방안은 資產所得에 대한 課稅의 확대를 통해 垂直的 衡平을 증진시킨다. 또 法人企業에 대한 課稅가 더 무겁게 됨으로써 法人企業과 個人企業 간 水平的 衡平도 증진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는 과표 1,000만 원 이상의 課稅標準階級에 있어서 오히려 法人企業의 세부담이 個人企業의 경우보다 더 가볍기 때문이다. 이 방안이 社內留保獎勵라는 정책방향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이다. 借入資金調達の 資本費用이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自己資本調達の 매력도 더 커지므로 유상증자와 함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금조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2) 增資所得控除의 擴大

利子損費認定으로 인하여 借入資金調達에 비해 有償增資를 통한 자금조달의 資本費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므로 그 불리점을 어느 정도 상쇄해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增資所得控除이다. 현행 增資所得控除에서는 營利法人에 의한 유상증자액에 控除率 10%(中小企業 12%)를 곱한 금액을 2년간(제조업 3년) 法人所得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利子損費認定은 차입자금조달액에 금리를 곱한 금액을 시간의 제한 없이 매년 法人所得에서 공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增資所得控除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혜택이 크다. 그러므로 增資所得控除가 시행되고 있지만 資本費用이 아직도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더 줄여 주자는 동기에서, 控除年限의 확대 혹은 控除率의 提高 등을 통한 增資所得控除의 확대라는 정책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방안은 稅源確保의 정책방향에 어긋난다. 有償增資額의 10~12% 이상을 2~3년 이상의 기간 동안 法人所得에서 控除해 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稅源廢食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방안은 또한 衡平增進의 정책방향에 어긋난다. 자산所得에 대한 課稅를 경감시킴으로써 資產所得者와 勤勞所得者 간 垂直的 衡平이 저해된다. 또 法人所得에 대한 課稅를 경감시킴으로써 法人과 個人事業者 간 水平的 衡平이 저해된다. 이 방안이 社內留保獎勵의 정책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중립적일 것으로 보인다. 借入資金, 社內留保, 增資라는 자금조달방법 중 借入資金에 비해 增資의 유리한 점은 증가하나 配當과 社內留保間 資本費用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3) 配當損費認定의 확대

이는 支給利子뿐 아니라 支給配當에도 法人所得稅에서 損費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세원확보의 목표에 역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衡平增進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이다. 이유는 增資所得控除 확대의 경우와 같다. 이 방안은 사내유보장려라는 정책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지급배당이 法人所得에서 공제되면 法人稅는 거의 사내유보에 대한 課稅로 남게 되는데, 法人稅를 피하기 위해서는 利益金の 처분단계에서 留保分보다 배당처분의 매력에 더 끌릴 것이기 때문이다.

4) 配當稅額控除의 확대

현재 1/3gross-up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배당세액공제의 gross-up 비율을 높임으로써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法人稅의 稅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所得稅의 세수를 줄임으로써 세원확보의 방향에 어긋난다. 勤勞所得者에 비해 資產所得者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垂直的 衡平을 저해함으로써 형평증진의 정책목표에도 역행한다. 배당세액공제가 확대되면 주주들의 지급배당 1원당 稅後

配當이 증가하므로 사내유보에 비해 상대적인 有利點이 증가한다. 따라서 주주들의 배당압력이 증가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이익금 중 留保處分이 감소하고 配當處分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社內留保獎勵의 정책방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5) 法人稅 철폐

法人稅와 所得稅의 완전통합으로도 불리우는 이 방안에 의하면 法人稅는 源泉徵收의 성격으로 명목상으로는 남게 되고 실제로 法人稅가 철폐되는 효과를 갖는다. 法人所得은 그 처분이 사내유보인지 배당인지에 관계없이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전액이 개별주주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개별주주는 각자에 적용되는 所得稅 稅率에 따라 所得稅로 납부하게 된다. 이 방안은 현행 배당세액공제의 gross-up 비율을 3/3으로 올리는 동시에 gross-up의 범위를 배당분뿐 아니라 보유분까지로 확대한 것과 동일하다. 이 방안이 세원확보의 정책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불확실하다. 만약 利益金 중 배당분뿐 아니라 유보분도 전액이 綜合所得으로 課稅된다면 전체 租稅收入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소위 二重課稅가 없어짐에 따라 기존 法人稅 稅收 중에서 배당분에 대한 세수는 감소할 수 있으나 유보분에 대한 세수의 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法人所得의 重課 여부와 관련하여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이 방안이 衡平增進의 정책방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이 방안이 원칙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원칙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稅負擔의 분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衡平增進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 방안이 社內留保獎勵의 정책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 방안으로 인해 배당압력이 더 커지고 사내유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IV. 結 論

資本主義 經濟의 발달에 따라 法人은 한 국가의 富를 創出하는 원천이 되고 이렇게 창출된 所得의 規模가 커짐에 따라 국가의 財政收入이 法人所得稅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기업이 經濟活動을 통하여 획득한 法人源泉所得에 대해 法人稅가 株主의 配當所得에 所得稅가 부과되는 二重課稅는 현행 租稅制度의 불합리, 비효율, 불공평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첫째, 支給利子에 대한 損費인정으로 인해 法人稅의 稅源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현행 法人稅가 稅源確保에 미치는 영향은 부

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法人稅는 同一所得 수준의 配當所得者와 利子所得者 간, 個人事業者와 法人 간의 水平的 衡平을 저해한다. 그러나 法人稅에서는 所得稅보다는 水平的 衡平의 중요성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점이 안 된다. 法人稅가 垂直的 衡平에 미치는 영향은 法人稅가 二重課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法人稅가 二重課稅라면 法人稅는 所得稅와 전연 별개의 課稅논리로 별개의 納稅者에게 부과되는 租稅가 되고 따라서 垂直的 衡平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垂直的 衡平과는 논리적 연관관계도 없게 된다. 만약 法人稅가 二重課稅되고 있다면 이는 資本所得의 일종인 配當所得에 重課함으로써 상대적으로 低所得層인 勤勞所得者에 비해 垂直的 衡平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法人所得 중 배당분이 二重課稅되고 있다는 명백한 證據 및 論理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았다. 法人을 個人과 같이 독립적인 權利, 能力을 갖는 實體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혹은 法人에 대한 課稅의 課稅根據를 능력이 아닌 便益에서 찾는 경우에는 法人便益에 대한 독립적인 課稅의 논리적 타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二重課稅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法人의 본질 및 課稅根據의 本質에 대한 異見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셋째로 현행 法人稅가 효율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法人-非法人間, 利益金の 配當處分-留保處分間, 借入資金調達-自己資金調達間 상대가 격의 변화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① 法人稅는 배당처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보처분으로 유도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社內留保獎勵라는 정책방향에 이바지하고 효율을 증대시킨다. ② 法人稅는 自己資金調達보다는 상대적으로 借入資金調達로 유도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有償增資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 어긋나고 효율을 저해한다.

이와 같이 현행 法人稅는 稅源確保에 실패하고 效率 및 衡平을 저해함으로써 社會厚生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法人稅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支給利子の 損費認定制限, 增資所得控除의 확대, 配當에 대한 損費認定, 配當稅額控除의 확대와 法人稅의 폐지라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안들의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稅源確保 및 衡平增進의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利子損費認定制限의 法人만이 이에 기여하고 그 외의 모든 방안은 이를 저해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하다. 社內留保獎勵에 있어서는 利子損費認定 제한의 방안만이 이에 기여하고 增資所得控除의 확대의 방안도 中立的이며 그 외에는 모두 이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利子損費認定 制限의 방안은 다른 방안들에 비하여 많은 政策方向에 기여하고 있다.

法人의 성격에 대한 '法人擬制說' 과 '法人實在說'이라는 상반된 見解하에서 二重課稅與否의 문제가 발생하여 法人稅擁護論者와 法人稅反對論者들의 각각의 주장이 계속되어 왔으나, 확실한 이론적 타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法人稅의 二重課稅問題로 말미암은 衡平과 效率性의 問題는 이자 소비인정제한 방안을 비롯한 여타 방안들의 적절한 시행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 참고 문헌 ◆

1. 광태원, "감가상각제도와 자본소득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85.
2. 신천수, 『法人稅의 實務』, 租稅通監社, 1988.
3. 재무부, 『租稅概要』, 1992. 3.
4. 재무부, 『財政金融統計』, 1993. 5.
5. 최광·하태형, "한국기업 財務構造 決定要因에 관한 理論 및 實證的 考察", 한국개발연구원, 1984.
6. 한국산업은행, 『財務分析』, 1992.
7. Auerbach, A., "Corporate Taxation in the U.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1983.
8. Feldstein, M. and L. Summers, "Inflation and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the Corporation Sector," *National Tax Journal*, 1979.
9. Habegger, A. C., "Efficiency Effects of Income from Capital," *Effects of Corporation Income Tax*, edited by M. Krzyaniak,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96.
10. King, M. A. and D. Fullerton,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 U.K., Sweden, and West German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11. Musgrave, R. A. and P. B.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4th edition, 1984.
12. Shoven, J. B. and J. Whalley, "A General Equilibrium Calculation of the Effect of Differential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72, pp. 281 ~ 321.
13. Stiglitz, J. E., "Taxation Corporate Financial Policy, and the Cost of Capita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73, pp. 1 ~ 34.